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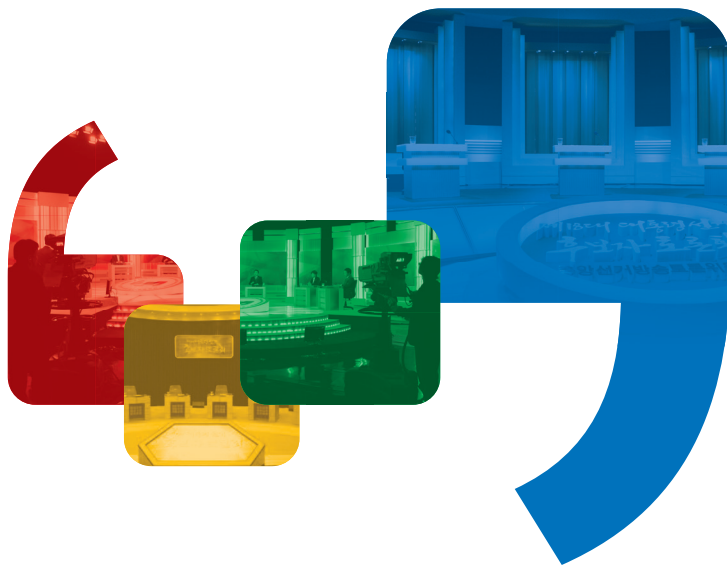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0504-160002-1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가이드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www.debate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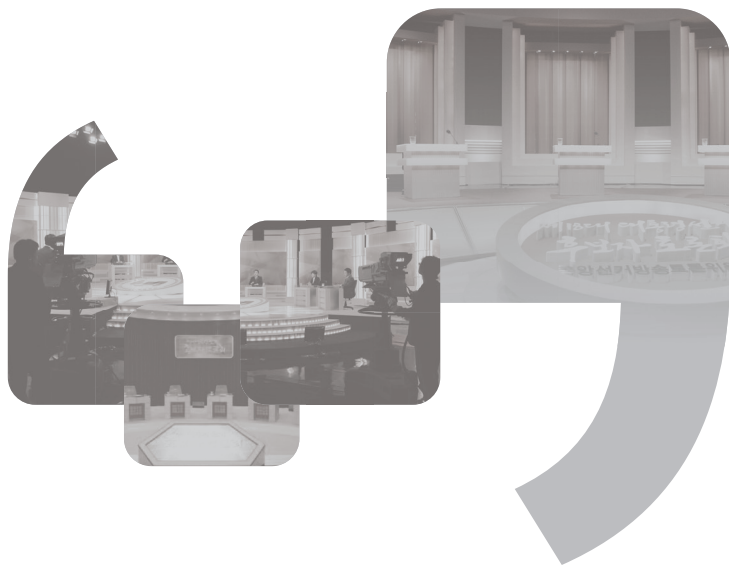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0504-160002-1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가이드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www.debates.go.kr

Contents

1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토론 07

1. 선거방송토론의 의의 09
2. 선거방송토론의 기능 09
3. 토론회 업무 흐름 10
4. 토론회 개최 개요 10
5. 각급토론위원회 주관 선거방송토론 종류 12
6. 선거별 초청대상 후보자 13

2

후보자를 위한 방송이해 15

1. 방송의 이해 17
2. 방송용 카메라의 종류 20
3. 카메라 샷(Shot)의 종류 22
4. 방송 준비(스타일 연출) 24

3

선거방송토론 참여하기 31

1. 선거방송토론 진행과정 33
2. 참석확인서 제출 33
3. 설명회 참석 36
4. 토론주제 연구 및 답변 준비 37
5. 토론 진행방식 연구 39
6. 토론회장의 분위기 파악 41
7. 리허설 및 최종점검 43
8. 토론 진행 44
9. 토론 평가 및 선거운동에의 활용 46

4

선거방송토론의 전략 49

- 1. 성공적인 선거방송토론을 위한 준비 ... 51
- 2. TV토론의 실전 기법 52
- 3. 토론의 일반적인 기술..... 56
- 4. 기초연설 및 맺음말 전략 57
- 5. 경청의 기술 57
- 6. 상대방의 공격에 따른 논박 기술 59

5

선거방송토론의 절차 61

- 1.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통지..... 63
- 2.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64
- 3. 사회자 선정 67
- 4. 질문자 선정 68
- 5. 토론진행방식 결정 68
- 6. 토론주제 선정 70
- 7. 설명회 개최 70
- 8. 질문사항 선정 72
- 9. 토론회 진행 및 질서유지 73
- 10.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74

부 록 83

- 1. 토론 진행방식(사례) 84
- 2. 토론진행표-큐시트(사례) 87
- 3. 토론회 시나리오(사례) 89
- 4.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95



용어의 표기

법규명

공직선거법	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관리규정	관리규정

위원회명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토론위원회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시·도토론위원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시·군토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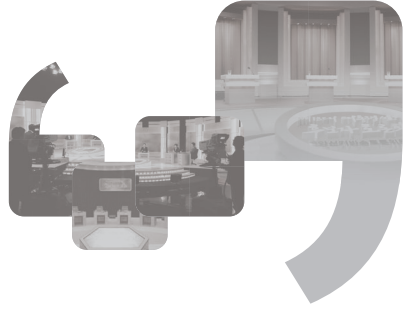
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방송연설회

후보자

법 제82조의2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는 후보자	초청후보자
법 제82조의2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	비초청후보자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는 '정당의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1명'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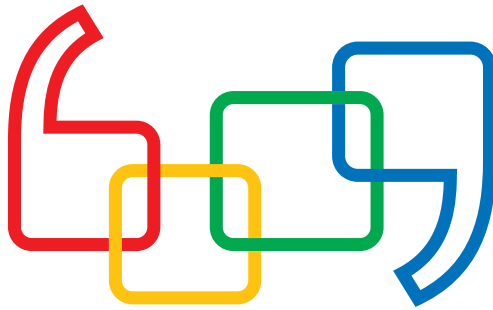


01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토론

1. 선거방송토론의 의의
2. 선거방송토론의 기능
3. 토론회 업무 흐름
4. 토론회 개최 개요
5. 각급토론위원회 주관 선거방송토론 종류
6. 선거별 초청대상 후보자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토론'편은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후보자
대담 · 토론회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에 규정된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한다면 후보자가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01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토론

1. 선거방송토론의 의의

선거방송토론이란 각종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정치 혹은 사회적 현안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을 가지고 상호 토론을 함으로써 타당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유권자와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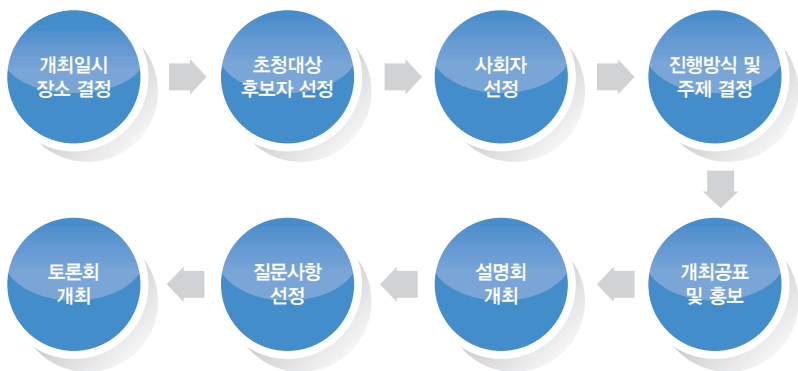
2. 선거방송토론의 기능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주어진 동등한 기회와 시간 안에서 규정된 형식과 절차에 따라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하며, 상대 주장을 반박하는 행위를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여과없이 전파하는 것이다. 또한, 후보자들이 정해진 토론형식 내에서 주제에 대한 쟁점과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정책·공약, 자질과 능력 등을 비교·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정책선거를 지향하고, 올바른 대표자 선출을 이루어내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선거운동방식이다.

외국 TV토론의 최근 동향

- 미국의 경우, 방송사가 중계하기는 하나 TV토론의 주최는 권위있고 공정성이 확보된 기관인 대통령토론위원회(Commission on the Presidential Debates : CPD)가 하고 있다. 토론위원회는 정당측과 방송사측의 협상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 독일 총리후보자 TV토론은 4명의 사회자가 진행하며, 프랑스 대통령후보자 TV토론은 2명의 사회자가 진행한다.
- ‘유권자’에게 최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포맷의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후보자 상호간의 직접대결을 유도하는 토론포맷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포맷이 각광받고 있다.

3. 토론회 업무 흐름



※ 세부 토론회 진행절차는 “제5장 선거방송토론의 절차편” 참조

4. 토론회 개최 개요

가. 주 관 :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나. 개최시기 : 선거운동기간 중

다. 개최횟수

- (1) 대통령선거 : 3회 이상
-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2회 이상
- (3)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1회 이상
- (4)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1회 이상

라. 개최시간 : 1회 120분 이내

마. 개최장소 : 중계주관방송사 스튜디오, 여건상 어려울 경우 외부시설 이용

바. 개최방법 :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

(1)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텔레비전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계방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영방송사란?

-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공직선거법」 §8의7②)

(2)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중계방송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할 수
없는 때에는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사. 중계방송 방법

(1) 생방송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녹화방송할 수 있다.

- 녹화방송하는 경우 내용을 편집할 수 없다.

(2) 각급토론위원회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5. 각급토론위원회 주관 선거방송토론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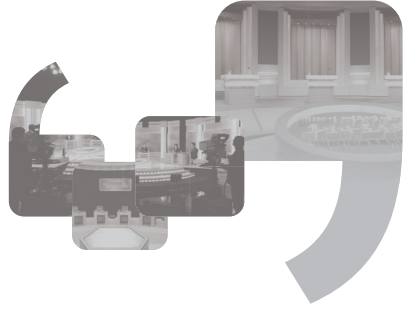
주관	종류	선거	개최시기	횟수	근거
중 앙	후보자 대담 · 토론회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2회 이상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임기만료 선거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일까지	월1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3
	정당 정책토론회	—	연중(단,공직선거의 선거일전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제외)	연2회 이상	「정당법」 제39조
시 · 도	후보자 대담 · 토론회	시 · 도지사선거 비례대표 시 · 도의원 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교육감선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구 · 시 · 군	후보자 대담 ·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 연설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자치구 · 시 군의장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6. 선거별 초청대상 후보자

선거별	초청대상 기준
대통령선거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후보자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 “후보자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의 선거를 말함. -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참고] 주관기관별 선거방송토론 종류

주 관	구 분	내 용
단 체 (「공직선거법」 제81조)	기 간	선거운동기간 중
	횟 수	제한 없음
	후보자 참여기준	1인 또는 수인(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방송여부	규정 없음
언론기관 (「공직선거법」 제82조)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 대선, 국선, 지방자치단체장, 비례광역 • 선거운동기간 전 – 대선 :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국선, 지방자치단체장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횟 수	제한 없음
	후보자 참여기준	1명 또는 여러 명(후보자 승낙을 받아)
	방송여부	방송 가능
각급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기 간	선거운동기간 중
	횟 수	• 대선 : 3회 이상 • 비례국선 : 2회 이상 • 시·도지사(교육감) · 비례시도의원 · 지역구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 1회 이상
	후보자 선정기준	대상 선거별로 초청 요건을 각각 규정
	참석의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불참시 과태료 부과) ※ 초청요건에 해당하는 후보자
	방송여부	• 공영방송사는 중계 의무 • 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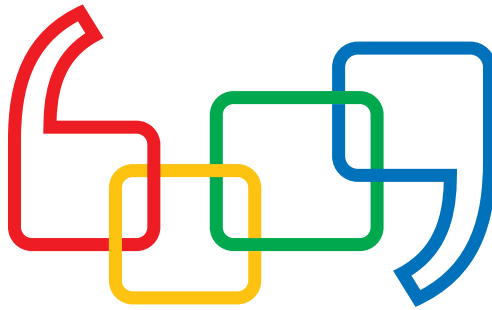


02

후보자를 위한 방송이해

1. 방송의 이해
2. 방송용 카메라의 종류
3. 카메라 샷(Shot)의 종류
4. 방송 준비(스타일 연출)





‘후보자를 위한 방송이해’¹⁾은 선거방송토론에 참여하는 후보자에게 방송에 대한 기본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였다.

방송 경험이 있거나 토론회 등에 참여 경험이 있는 후보자는 참고만 해도 된다.

1) 참고문헌 : 토론의 기술(이연택, 2003); 의사 전달과 방송출연 기법(고수웅, 2005); 스타기자 Audio 트레이닝(박은주, 2013); 알기 쉬운 방송영상 입문(권중문, 2014).

02 후보자를 위한 방송이해

1. 방송의 이해

가. 방송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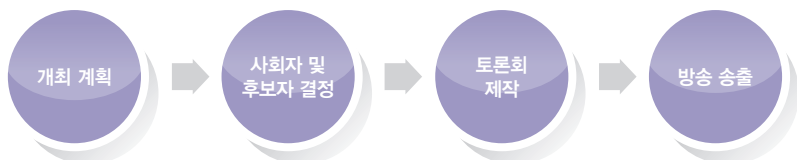
-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방송법」제2조).
- (2) 방송은 특정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수용자들에게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고 객관성과 규범성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여 사회적 합의와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며, 역사성과 시의성이 있는 내용들을 다룸으로써 민주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나.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형태

(1) 일반 프로그램 방송 제작 과정



(2) 선거방송토론 제작 과정



다. 방송 제작 시스템

- (1) 스튜디오(Studio)는 부조정실과 연결되어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을 제작할 때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영상 설비와 음향 설비, 조명 설비, 무대 세트 등을 각각 갖추고 있다.

〈방송사의 스튜디오〉



- (2) 부조정실(Studio Control Room)은 스튜디오 카메라, 오디오 장비, 조명 장비 등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모든 장비를 조정하는 장소이다.
- (3) 주조정실(Master Control Room)은 부조정실의 시스템과 거의 비슷하며, 차이점은 제작된 녹화테이프를 방송하거나 생방송을 바로 송출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방송 프로그램, 방송 예고, 광고 등 프로그램을 편성된 시간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송출하는 장소이다.

라. 방송 제작 스텝

- (1) 연출자는 프로듀서(Producer)와 디렉터(Director)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PD’(피디)라고 한다. 프로듀서는 프로그램의 기획을 담당하며, 디렉터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맡아 출연자에게 연기를 지시하고, 기술 스텝과의 협조에 의해 연출한다.
- (2) 조연출(Assistant Director, AD)은 연출자가 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출연자나 미술, 분장 등의 제반 준비를 하고, 프로그램 제작 시간도 확인하여 연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 (3) 무대 위에서 연출을 감독하는 무대 감독(Floor Director, FD)은 연출자의 대리인으로 녹화 당일 출연자들의 출석 유무 확인, 의상과 분장 등의 모든 준비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는 등 제작 전반 업무에서 PD와 AD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4) 카메라 감독(Camera Director)은 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용 준비를 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에 적합하게 촬영하는 일을 한다. 영상 제작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 시각화되는 카메라 샷(Camera Shot)의 피사체 또는 장면이 분위기에 가장 적합한 내용의 영상 언어로 표현하는 역할 등을 한다.
- (5) 기술 감독(Technical Director, TD)은 카메라, 영상, 음향 등의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기기의 조작을 비롯한 모든 기술적 업무를 감독하고 지휘한다. 기술 분야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모든 기술 스텝들의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있다.

마. 생방송과 녹화방송

- (1) 생방송은 선거방송, 스포츠 중계 등과 같이 프로그램의 제작과 송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송을 일컫는다. 유권자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생생한 현장을 연결한다는 생동감이 유권자의 시선을 더욱 집중시킬 수 있다.
- (2) 녹화방송은 생방송과 다른 개념으로 드라마, 다큐멘터리, 해외 제작 영상물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방송 제작 방식이다. 대부분 사후 편집과정을 거쳐 방송한다.
- (3) 선거방송토론은 대부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녹화방송의 경우 편집 의혹이 생길 수 있고 현장성, 시의성 그리고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녹화에 의해 방송할 수도 있으나 이는 중계방송사 사정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편집 없이 녹화방송 한다.

바. 스튜디오 방송과 외부 공간 방송

- (1) 스튜디오 제작은 제작의 불리한 요인들을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불필요한 소음이나 자연조건을 초월할 수 있다. 모든 제작 여건(부조정실, 음향, 조명 시설 등)들이 한 곳에 집결되어 있으므로 방송제작 여건이 좋다.
- (2) 외부 공간(회관, 체육관, 타 스튜디오 등)을 이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중계차 동원, 조명·음향시설 설치 등의 제약이 발생한다.

2. 방송용 카메라의 종류

방송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는 상하좌우 회전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팬앳틸트 헤드(pan and tilt head)와 카메라 높이를 조절해 주는 페디스털(pedestal)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밖에 렌즈 및 촬상관, 영상 증폭기, 촬상관용 편향 회로 및 카메라맨이 카메라 앵글을 선택하고 초점을 맞추기 위한 뷰파인더(viewfinder)가 부착되어 있다. 야외 중계용 카메라는 페디스털 대신 트라이포드(tripod) 및 달리(dolly)를 부착하여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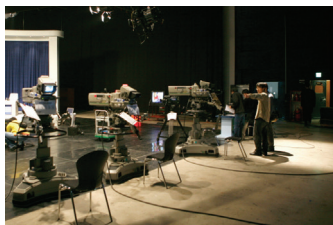
종류로는 스탠더드 카메라(standard camera)와 핸디 카메라(handy camera)가 있다. 일반적으로 스탠더드 카메라와 핸디 카메라(ENG 카메라 또는 EFP 카메라)를 총칭해 텔레비전 카메라라고 한다.

가. 스탠더드 카메라

- (1) 스튜디오 카메라는 방송국 스튜디오 내에서 제작 시 사용되는 카메라로 평평한 바닥에서 자유자재로 이동한다.
- (2) 중계 카메라는 스포츠 생중계, 야외 이벤트 행사 등 야외에서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할 때 사용하는 카메라이다.

- (3) 이들 카메라는 공통적으로 혼자서 하나의 카메라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조정실 또는 중계차와 연계한 멀티 카메라(2대 이상)를 사용한다.

〈스튜디오 카메라〉



나. ENG 카메라와 EFP 카메라

- (1) ENG 카메라는 TV 뉴스 취재용으로 개발된 휴대용 카메라이다. 카메라부와 녹화부의 일체형으로 소형 경량화로 인한 속도성, 기동성, 경제성 등 뉴스 프로그램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과 같이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야외촬영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2) EFP 카메라는 카메라부와 녹화부의 분리형으로 부조정실의 CCU (Camera Control Unit)와 항상 연결되어 스튜디오 또는 중계방송 촬영 시 멀티 카메라로 이용된다.

〈ENG 카메라와 EFP 카메라〉



다. 지미집

크레인과 비슷한 장비로 카메라를 스튜디오 바닥까지 내리고 약 3미터까지 올릴 수 있다. 전·후, 좌·우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 아주 다양한 카메라 앵글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쇼 프로그램과 같이 역동적 카메라 샷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에 많이 사용된다.

〈지미집 카메라를 설치한 스튜디오〉



3. 카메라 샷(Shot)의 종류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바스트 샷(Bust shot : BS), 웨이스트 샷(Waist shot : WS), 풀샷(Full shot : FS)등을 주로 활용한다. 토론자가 상호 마주한 위치에 있을 경우 오버 숄더 샷(Over shoulder shot : OSS)을, 진행상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반응을 보여주기 위한 리액션 샷(Reaction shot)을 활용하기도 한다.

가. 바스트 샷(Bust shot : BS)



인물 중심으로 가슴 위를 촬영한 샷으로 토론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샷이다.

나. 웨이스트 샷(Waist shot : WS)



인물의 허리 위 상반신을 활용한 샷으로 안정된 화면을 얻을 수 있으며, 쇼 프로그램, 드라마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 풀샷(Full shot : FS)



인물뿐만 아니라 주위 배경을 함께 촬영한 샷이다. 세트나 인물의 움직임 등 상호 위치 관계, 방향 감각을 알려주는 샷을 말하며, 하나의 장면에 후보자 모두가 보이는 샷이다.

라. 오버 숄더 샷(Over shoulder shot : OSS)

한 사람의 어깨 너머로 다른 사람을 촬영하는 샷이다. 상호간의 토론 상황을 보여주는 샷이다.

마. 리액션 샷(Reaction shot)

토론 프로그램 등에서 카메라가 항상 발언하는 사람만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표정과 반응을 촬영하는 샷을 말한다.

4. 방송 준비(스타일 연출)

가. 복장

- (1) 방송화면으로 송출되므로 가급적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되, 통상적인 장신구나 배지, 법 제68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옷, 어깨띠를 착용·부착할 수 있다(관리규정 제8조).
- (2) 시간, 장소, 상황에 따른 복장연출이 필요하다.
 - 시간 : 일일별(오전, 오후, 저녁), 계절별, 중요 날별
 - 장소 : 세트 배경, 테이블·의자에 따른 색상 고려
- (3) 목 길이, 어깨넓이 등에 대한 개인별 신체도 고려해야 한다.
 - 얼굴과 어깨의 화면에서 나타나는 비율이 중요하다.
 - 의상의 어깨를 키우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이미지 균형을 맞춘다.
- (4) 남녀 모두에게 짙은 회색, 짙은 검색이 무난하다.
 - 너무 진한 검정색과 흰색, 지나치게 밝은 색은 피하는 것이 좋음.
 - 어떤 종류든 무늬는 피하는 것이 좋다.
 - 넥타이는 약간 밝은 것으로 준비한다.
 - 넥타이, 스카프 등을 선택 시에는 잔 체크무늬나 방울 무늬는 절대 금물 (방송화면에 떨림 현상이 일어남)
- (5) 여성의 경우,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현란한 색상, 장식, 치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 블라우스 등 반쳐 입는 옷은 겹옷과의 배색을 잘 맞추어 자유롭게 선택하되, 요란한 레이스 등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은 유권자의 거부감을 사게 되므로 주의한다.
 - 특이한 머리 모양, 번쩍거리는 장식 등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손톱 매니큐어도 손을 쓸 경우를 생각해 지나치게 진한 색상은 피하도록 한다(방송 화면의 색상은 실제보다 다소 진하게 나타나 보임).

사례

- ○○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은 TV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방송국 스튜디오를 빌려 실제 상황과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 실전처럼 연습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캠코더를 설치하여 직접 본인의 모습 등을 찍어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토론을 준비하였다.



나. 헤어스타일

- (1) 방송 시 미세한 머리카락 노출도 방송이미지에 변화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2) 젤, 무스,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서 방송성격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필요가 있다.
 - 남성의 경우 맨눈으로 볼 때 적합한 길이보다 조금 길게 기르는 것이 화면상으로 보기 좋다.
 - 여성의 경우, 긴 머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3) 이마에 대한 노출과 전체적인 얼굴윤곽에 따른 고려가 있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시청자에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세련된 이미지가 필요하다.
 - 개인별 이마의 넓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마 노출이 필요하다.
 - 달걀형, 사각형, 원형, 역삼각형의 얼굴 형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헤어스타일을 해야 한다.

다. 분장

- (1) 개인별 피부에 따른 보완을 해야 하며, 방송카메라에 노출시 실제보다 더 비대하거나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메이크업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다.
- (2) 눈썹의 움직임이 성격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눈썹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부적절한 움직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 자세 등

(1) 표정관리

- 되도록 밝은 표정으로 하되 진지하고 성실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 가식적인 웃음이나 얼굴을 찌푸리거나 입을 오므리는 버릇 등은 방송에 어울리지 않는다.
- 유권자에 대한 진실된 마음가짐이 좋은 표정을 만들어 준다.

(2) 앉은 자세, 얼굴각도

- 고개의 좌, 우, 상, 하의 위치에 따라서 얼굴연출이 달리되며 얼굴이 정면을 향했을 때도 본인의 생각과 달리 모니터 상에선 얼굴이 비뚤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교정이 방송 전(리허설 등)에 필요하다.
- 앉은 자세는 개인별로 양어깨의 길이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해야하며 대개는 정자세로 정면을 봐야 한다.
- 말할 때의 바른 자세는 몸의 긴장을 풀고 허리를 세우는 것이다. 약간의 손동작이 가미되면 자연스럽게 보이나 지나친 경우 산만한 느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상체만 나오는 방송인 경우 상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체를 의자에 밀착, 하체까지 나오는 방송세트인 경우 다리의 움직임도 고려해야 한다.

(3) 시선처리

- 토론회에서는 후보자의 시선처리가 가장 중요하다.
- 후보자의 시선은 유권자(카메라), 사회자 또는 패널, 그리고 방청객, 상대방 후보로 구분된다.
- 주로 답변의 대상이 되는 사회자나 상대 후보에 시선을 주되 소신과 주장을 피력할 시에는 카메라를 응시하여 유권자에게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이 좋다.

- 카메라를 전면에 두고 후보자들이 배치되므로, 항상 붉은 등(탈리 램프)²⁾이 켜져 있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상대의 발언을 경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선이동의 속도와 응시 시간,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의 활용이 핵심이다.
-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시선처리와 미소, 그리고 제스처 등은 타 후보자에 대한 자신감을 유권자들에게 곧바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응시할 경우 렌즈 하단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사
례

- 비스듬히 앉기, 회전일자 돌리기, 손가락 꼼지락거리기, 다리를 꼬거나 흔들기, 볼펜 굴리기, 턱 괴기, 책상 위 종이 만지작거리기 등은 거만해 보이거나 경망스러워 보일 수 있어 주의



(4) 말하기 속도, 톤

- 방송용 스피치에선 말하기 속도와 톤이 생명이다. 바쁜 시청자들은 너무 느릿한 스피치에 지루해하여 채널을 쉽게 옮길 수 있고, 말하기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해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 실제 말하기 속도와 방송에서 말하기 속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약간 느리다 싶게 하는 것이 좋다.
- 토론을 하다보면 일반적인 톤이 올라가므로 평소 톤보다 약간 낮은 기분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 명확한 발음이 되기 위해 신경을 써야하며, 장모음, 단모음 등의 유사단어를 구분해야 한다.

2) 탈리 램프(tally lamp) : 방송이나 본격적인 스튜디오 녹화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카메라를 출연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카메라의 위쪽이나 앞쪽에 부착하는 램프

- 톤 역시 마이크를 통해서 실제 방송 때와 다르므로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

(5) 제스처

- 손은 책상 아래 가만히 두고 답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너무 딱딱해 보이므로 책상 위에 적당히 두다가 자연스레 제스처를 쓰는 것이 보기 좋다.
- 원고는 책상 위에 두고, 진지한 이미지를 위해 만년필이나 볼펜 등을 손에 쥐고 자연스레 활용한다.
- 너무 큰 액션이나 헛기침,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 땀을 손수건으로 닦는 모습은 지양한다.
- 너무 자주 사용되면 시청자에게 산만함을 줄 수 있으며,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 시청자에게 경직된 인상을 줄 수 있다.
- 평상시보다 미세한 동작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우면서도 상대방에게 오해가 가지 않을 적절한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



참고 사항

- 토론을 하면서 양손의 처리는 후보자의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양손의 움직임 등 제스처로 이미지를 완성한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
- 메모를 하거나 상대 후보의 답변이나 질문을 듣는 중에도 의도적인 양손의 처리는 유권자의 시선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
- 상대방의 질문에 메모를 하거나 손깍지를 끼거나 하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유권자에게 호감 또는 자신감을 전달

(6) 마이크 관리

- 무선 핀(Pin) 마이크는 대부분 옷깃이나 넥타이에 꽂게 되므로 심하게 움직이거나 스치게 될 경우 빠질 염려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 핸드마이크 사용시 화자의 입으로부터 15~30cm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입으로부터 45도 각도를 유지하는게 좋다. 입과 너무 가까우면 저주파음이 증폭되어 무거운 소리가 된다.

〈마이크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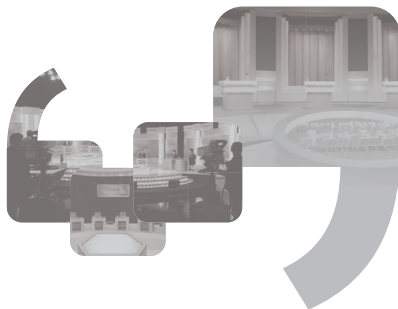


무선 핀마이크



핸드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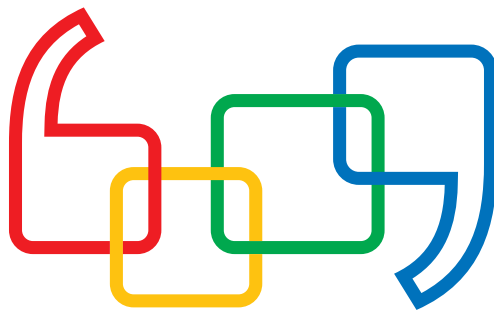
03



선거방송토론 참여하기

1. 선거방송토론 진행과정
2. 참석확인서 제출
3. 설명회 참석
4. 토론주제 연구 및 답변 준비
5. 토론 진행방식 연구
6. 토론회장의 분위기 파악
7. 리허설 및 최종점검
8. 토론 진행
9. 토론 평가 및 선거운동에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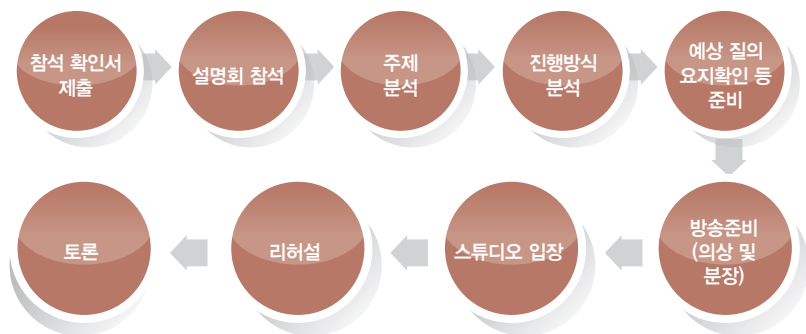


'선거방송토론 참여하기'편은 후보자가 대담 · 토론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대담 · 토론회를 마치기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기술하였다.

후보자가 어떻게 준비하고 참여하는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03 선거방송토론 참여하기

1. 선거방송토론 진행과정



2. 참석확인서 제출

참석하기 전에...

- 후보자는 적극적, 긍정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한 번 참여하면 의외로 쉽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 후보자는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한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토론에 임할 수 있다.

가.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통지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까지**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토론회 참석 포기 의사는 변경할 수 없다.

나. 초청대상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참사실 등이 방송자막 등으로 공개 될 뿐 아니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답·토론회 참석확인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개최일시
3. 대답·토론회 참석자

가. 참석자별 : (후보자)·(대답·토론자)

나. 성명

다. 생년월일

위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개최하는 대답·토론회에 참석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후보자)·(대답·토론자)	○○○	인	]
	○○○당 대표자	○○○	직인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주 1.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대답·토론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정당의 대표자가
후보자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참석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대담·토론회 불참사유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소속정당명
3. (후보자)·(대담·토론자) 성명

위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불참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증빙자료 ○부

년 월 일

[(후보자)·(대담·토론자) ○○○ 인]
○○○당 대표자 ○○○ 직인]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주 1.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불참사유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설명회 참석

가.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는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1) 부득이 후보자가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나 (후보자의 위임장을 제출해야함) 가급적 후보자가 참석한다.
- (2) 설명회에 참석한 후보자는 안내하는 내용을 숙지한다.

※ 설명회에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에는 토론위원회가 안내한 내용을 반드시 전달받아야 한다(대리인으로부터 진행방식, 발언순서, 후보자 준수사항 등을 전달받지 못해 후보자가 토론회 현장에서 당황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을 유의).



설명회 내용

- 대담 · 토론회의 개최 및 중계방송 일정
- 참석후보자 및 사회자 성명
- 토론 주제 · 진행 방식
- 후보자의 작성 및 발언순서 추천, 토론회에서의 후보자 준수사항
- 대담 · 토론회의 질서유지(방청객 제한, 출입증 발행 등), 토론회장내 반입이 불가한 사항
- 토론회장의 설비내용 안내 : 토론자와 사회자 등의 위치, 대기실 및 분장실 위치
- 기타 대담 · 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토론회 당일 시간계획, 분장이 필요한 후보자 확인, 토론자의 착용 · 부착물 및 지참물 관련, 방송사 위치 및 주차장 안내 등

나.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 (1) 후보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한다.
- (2)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첨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무국장 또는 간사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천할 수 있다.

- (3) 먼저 **후보자의 기호** 순에 따라 추천순위를 추천하고, 추천순위에 따라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천한다.

4. 토론주제 연구 및 답변 준비

가. 자신의 공약 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의 공약까지 분석한다.

- (1)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 상대 후보 공약의 장점과 약점을 분석한다.
- (2) 상대 후보의 공약이 왜 우리 공약과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허점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나. 설명회시 안내하는 토론주제를 분석한다.

- (1) 주제의 내용, 의미, 어휘와 용어의 정의 등을 명확히 정리한다.
- (2)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분석해 본 후, 주제에 맞는 토론을 준비한다.
- (3)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토론위원회에 확인한다.
- (4) 주제와 관련된 자료, 데이터, 문헌, 문건, 잡지와 신문기사 등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수집자료

- 주제와 연관 있는 문제와 찬·반 의견들
-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 사례
- 주제와 관련된 최신 통계자료, 전망, 여론조사 결과 등

다. 답변을 준비한다.

(1) 토론에서 강조·부각시킬 대상을 철저히 준비·점검한다.

(2) 답변은 되도록 메모식으로 준비한다.

- 완전한 문장으로 준비하면 원고를 계속 내려다보게 되고 원고에 집착하게 된다.
- 아무리 원고를 잘 읽더라도 읽는 모습이 화면에 비추어질 경우, 유권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어렵다.
- 내용의 숙지는 충분히 하되, 원고는 되도록 간략히 준비하여 대화하는 식으로 토론한다.

사례

- ○○ 후보자는 준비한 기초연설문을 지정된 시간 내에 다 읽지 못함



(3) TV를 시청하는 유권자가 토론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준비 사항

- 출마동기, 숙원사업, 현안문제, 이슈 및 쟁점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예상 답변 준비
- 정견, 설문, 공약 가운데 가장 강조해야 할 부분을 미리 정함
- 지역 실정에 맞는 개인적 사례 등 미리 점검

5. 토론 진행방식 연구

가. 토론 진행방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스포츠 게임에서 규칙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 (1) 되도록 설명회에는 후보자가 직접 참석하여 진행방식 등을 충분히 사전에 이해하도록 한다.
- (2) 부득이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진행방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후보자에게 자세히 설명한다.

사 례

- ○○ 후보자는 설명회에 참석한 대리인이 진행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토론회 당일 토론 현장에서 물어봄
- ○○ 후보자는 토론 진행 도중 사회자에게 토론 진행방식을 물어봄



나. 선거방송토론의 진행방식

사회자 공통 또는 개별질문 방식

- 사전 설명회에서 추첨에 의해 좌석 및 발언순서가 정해지므로 자신의 답변순서 등을 확인해 둔다.
- 선거방송토론의 기본적 유형으로 많이 사용한다.

후보자 주도권토론 방식

- 후보자 자신의 발언시간과 토론하고자 하는 상대 후보자의 발언(답변)시간도 주도권을 부여받은 후보자의 발언시간에서 차감되며, 반드시 상대 후보자를 지정하여 질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 특정 후보자가 토론에서 장시간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등 각종 선거의 후보자토론회에서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후보자 상호토론 방식

- 발언시간 배분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며, 발언순서와 질문·답변시간이 정해져 있다.
- 발언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자의 제지가 있을 수 있다.
-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등 각종 선거의 후보자토론회에서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혼합토론 방식

- 사회자 공통 또는 개별질문 방식에 후보자 주도권토론이나 상호토론 방식을 혼합한 방식
- 한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 주로 사용하는 방식

기조연설 및 맺음말 방식

- 논의의 시작을 이끌거나, 토론의 마무리를 위한 방식
-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등 각종 선거의 후보자토론회에서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 UCC,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유권자가 직·간접적으로 질문하는 토론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 (1) 선거방송토론 특성상 여러가지 주제를 두고 토론하므로 진행방식의 충분한 이해와 연습이 필요하다.
- (2)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가 다수이고 발언순서가 복잡한 방식 등의 경우나 토론방식에 대해 충분한 사전 준비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발언순서를 잊거나 하고 싶은 얘기를 시간 내에 끝마치지 못하는 등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 토론 진행방식 사례

- (1) 토론 진행 중 유권자 질문 가미형 방식
- (2) 제한적 시간총량제 적용 방식
- (3) 후보자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부여한 방식

※ 부록 「토론회 진행방식 사례」 참조

6. 토론회장의 분위기 파악

가. 도로 정체 가능성, 분장 및 리허설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여유있게 도착한다.

※ 토론회 장소에는 일찍 도착하여 차분한 마음을 갖도록 한다.

사례

- ○○ 후보자가 현 국회의원인 점을 부각하여 리허설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여 세 과시 시도
- ○○ 선거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자보다 한발 늦게 토론회장에 입장하기 위해 입장 도중 일부러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의 세 과시 시도



나. 좌석 배치 형태와 청중 유무를 확인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토론의 사전 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

〈토론회장 점검내용〉

- (1) 세트 배경색
- (2) 카메라 및 타이머 위치 등 확인
- (3) 좌석 배치 확인
- (4) 청중 유무 등



다. 좌석 순서는 사전 설명회에서 추천된 순서로 배치한다.

라.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사회자 및 상대 후보자와 인사를 하면서 긴장된 분위기를 풀고 상대방의 얼굴이나 억양 등을 잘 살펴 토론에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한다.

마. 토론회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시 확인·점검한다.

- (1) 토론회장에서는 A4용지 규격 이내 20장 이하의 낱장으로 된 자료만 지참가능(관리규정 제9조1항)하다. 낱장으로 된 자료는 본인의 발언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그 내용이 방송화면에 직접 표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서류, 노트북, 도표, 그림, 홍보자료,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을 소지한 채 참여할 수 없음

(2) 토론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토론회에 사용할 수 없다(관리규정 제9조2항).

사례

- 준수사항 위반으로 상대 후보자의 항의 또는 사회자(토론위 관계자)의 제지를 받고 당황하여 토론회를 망치는 사례가 있음
- ○○ 후보자는 토론회장에 A4용지 20장 이상의 낱장을 지참하여 토론회 시작전 자료 일부를 회수 당한 사례가 있음.



바. 토론회에 따라 유권자의 질문을 즉석에서 받거나 인터넷·팩스·전화 등을 통해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시금 확인한다.

〈후보자의 배치와 토론의 구조〉

좌우 대칭 구조

- 토론자들끼리 마주보고 앉는 형태
- 상호 대립적 토론에 적합
- 토론자 중심의 토론 형태
- 다자간 토론에는 부적합



전후 맞대면 구조

- 사회자를 중심으로 한 토론 가능
- 후보자간 균형 유지용이
- 미 대선토론의 기본 구조
- 15·16대·18대 대선토론 적용



양끝 사회자 배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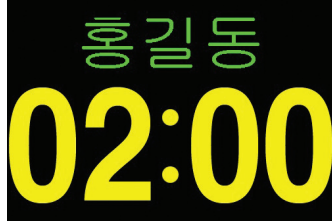
- 공간 구성에 용이
- 상호토론은 취약
- 17대 대선토론 적용



〈타이머 표시 사례〉



[현재 시각]



[발언 시각]

7. 리허설 및 최종점검

가. 후보자는 최종적으로 리허설을 통해 토론회 진행순서 및 소요시간을 확인한다.

※ 사회자나 토론위 관계자, FD 등의 주의사항을 주의깊게 경청한다.



나. 리액션 샷(Reaction shot, 발언하지 않는 후보를 찍는 것)의 활용 여부를 미리 방송사나 토론위원회에 문의한다.

다.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메모지, 펜 및 생수 등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한다.

라. 핸드폰 끄기, 복장 정돈, 화장실 다녀오기, 토론자료 챙기기

마. 후보자는 리허설을 마치고 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 준비한 자료를 다시 검토한다.

※ 진행방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리허설을 마친 후 방송사나 토론위원회 관계자에게 미리 확인한다(방송 중에 진행방식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다).



리허설의 필요성

- 사회자와 후보자가 출연한 가운데 방송사 스태프와 카메라, 마이크, 음향 및 스튜디오 장비 등을 활용하여 본 토론회와 똑같은 조건에서 한다. 이때, PD는 진행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사회자에게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주문을 하게 된다.
- 카메라맨이 적당한 거리에서 적절하게 비춰주고, 후보자 별로 마이크 소리를 높이거나 낮추면서 조정하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후보자가 토론을 잘 하도록 점검해준다.
- 방송 직전 후보자들이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간단한 말을 하도록 하면서 마이크와 오디오 상태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시정한다.
- 리허설을 통해 후보자는 목소리, 표정, 자세, 몸짓 등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인지할 수 있다.
- 후보자는 자신을 전담하여 촬영하는 카메라가 어느 것인지 확인 할 수 있다.

8. 토론 진행

가. 사회자가 오프닝멘트 후 후보자를 소개하면 후보자를 담당하고 있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가볍게 목례를 한다.

나. 일단 방송에 들어가면 후보자의 마이크는 항상 열려 있으므로 기침 소리 등 잡음이 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선거방송토론은 발언시간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설치된 타이머(토론시간관리시스템)의 잔여시간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한된 발언 시간(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기산)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 타이머상의 발언 잔여시간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도 좋지 않음

라.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론진행표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으므로(**관리규정 제10조1항**) 유의한다.

마. 토론자는 **토론회의 진행 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임의로 토론 회장을 벗어난 경우 **그 토론자는 토론회장에 다시 입장할 수 없음 (관리규정 제10조3항)**에 특히 유의한다.

사
례

- ○○○ 후보자는 토론회 도중 좌석을 이탈해 퇴장함. 이로 인해 그 이후에는 ○○○ 후보자가 빠진 채 녹화 됨.



바. 상대 후보자의 발언을 충실하게 경청하는 모습(발언내용을 필기하는 모습) 등은 시청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사. 후보자 상호토론 시 발언권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오른손을 가볍게 들어올려 의사를 표현한다.

아. 토론회가 종료 된 후 토론회장에서의 이미지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후보자 유의사항

- 후보자는 가급적 주어진 답변시간을 모두 사용하여 토론시간이 남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다른 후보자의 발언 중 끼어들지 않는다(끼어들기가 허용된 진행방식은 제외).
- 주제나 질문사항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발언하지 않는다.
-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지 않는다.
→ A후보자 현수막의 내용이 비방에 해당되어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후보자토론회 녹화 시 “A후보자의 B후보에 대한 일부 비난 발언은 공직선거법에 위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자막을 삽입한 사례가 있었다.
- 토론회 진행을 방해하거나 토론회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다.
- 토론위 관계자 또는 사회자의 제지나 중지 명령에 따라야 한다.

9. 토론 평가 및 선거운동에의 활용

가. 유권자 및 언론들의 반응 확인

- (1) 시청자(유권자)들의 반응을 살펴 어떻게 토론을 향상시켜 나갈지 혹은 어떤 이미지를 계속 유지할 지에 대해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 상대 후보자와 지지율에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던 ○○○ 후보자는 TV토론 이후 거리에서 거의 연예인 대접을 받고, '투표 안하려고 했는데 TV 보고 찍을 사람이 생겼다'는 아주머니와 환호성을 울리며 사인해 달라고 몰려드는 시민을 보며 '이겼구나'하고 확신했다고 함.



- (2) 토론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토론회 이후 보도된 신문과 TV보도도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나. 선거운동에의 활용

- (1) 토론회에 대한 자체 모니터팀을 구성하여 자신의 말투나 표정, 시선 등을 확인하여 알려주도록 부탁한다.

→ 이후 방송인터뷰나 마이크를 사용하는 거리유세 등에 도움이 됨.

- (2) 지지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토론회 관련 조언을 구하거나 토론방송 시청하기를 독려한다.

→ 부탁·독려 자체가 무관심한 유권자들과 무리없이 말문을 트는 계기가 되고 후보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깊어질 것임.

- (3) 토론회를 무시하 마쳤다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를 선거운동 소재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상대 후보보다 잘한 내용을 입소문 홍보에 활용 등).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TV토론회 국민평가단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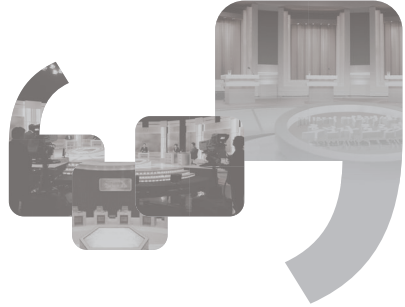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운영한 후보자TV토론회 국민평가단의 설문조사 결과 지지후보자 선택시 영향을 미친 선거운동방법은 후보자TV토론 29.3%, 선거공보 26%, 거리에서의 연설 및 활동 16%, 주변사람들의 이야기 13%, 선거벽보 및 현수막 11%, 기타 5%로 나타나 후보자TV토론이 지지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4) 토론회 중계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중앙토론위 또는 중계방송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 (5) 토론회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토론이나 방송인터뷰, 거리연설 등에 적극 대처한다.



토론회를 마치고 난 후...

- 토론회에 참여한 사회자와 상대 후보자들과의 인사 등을 방송에서는 있는 그대로 유권자들에게 전달한다.
- 토론회의 내용과 세부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토론시간 동안 비쳐진 후보자의 이미지도 유권자들은 기억하므로 토론회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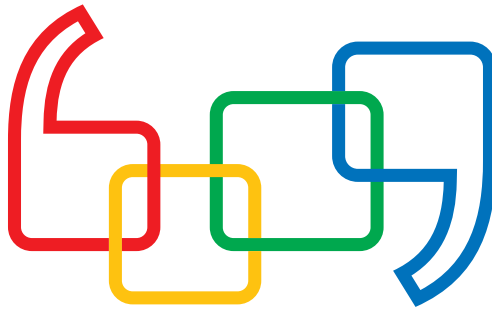


04

선거방송토론의 전략

1. 성공적인 선거방송을 위한 준비
2. TV토론의 실전 기법
3. 토론의 일반적인 기술
4. 기초연설 및 맺음말 전략
5. 경청의 기술
6. 상대방의 공격에 따른 논박 기술





'선거방송토론의 전략'편³⁾은 선거방송토론에서 후보자에게 필요한 일반적인 토론 기법
및 전술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후보자는 자기에게 맞는 선거방송토론 전략으로 토론에 임하시기 바란다.

3) 참고문헌 : 인터넷과 TV시대의 선거전략(최문휴, 2002); 토론의 기술(이연택, 2003);
토론매뉴얼(중앙공무원교육원, 2006); 선거전술전략(김홍순 · 이원우, 2007);
선거전략&선거캠페인(석종득, 2008).

04 선거방송토론의 전략

1. 성공적인 선거방송토론을 위한 준비

가. 토론은 목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1) 성대도 휴식이 필요하다.

※ 선거에 임해서 지나친 의욕으로 목을 혹사하기 쉽다. 말을 적게해서 휴식을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좋다.

(2)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성대 점막이 촉촉해져 진동이 원활해진다. 목에 이상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전문병원을 찾아 처방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3) 방송 직전 알코올, 카페인, 유제품, 당류 섭취를 자제한다.

※ 술은 트림을 유발하고 성대 점막을 붓게 하며 입안을 마르게 한다. 커피, 녹차, 코코아 등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료도 목을 건조하게 한다. 우유나 요거트 등의 유제품은 성대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목소리를 탁하게 하거나 잠기게 한다. 사탕이나 초콜릿, 과일 주스 등은 입안에 침을 고이게 하므로 좋지 않다.

나. 많은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

(1) 다양한 이슈와 쟁점에 대한 충분한 배경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는 대비가 필요하다.

※ 토론은 충분한 지식과 정보의 대결이다. 성공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관련 이슈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과 지역적 현안이나 쟁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2) 쟁점과 논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전문가나 학자 등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 주장이나 찬·반 견해에 대한 허와 실을 검증 또는 점검받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3) 토론은 예측할 없는 상황에서 상대와 계속 마주해야 하므로 많은 연습과 훈련을 해야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

2. TV토론의 실전 기법

-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역정책과 현안들에 대한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다.
- 주도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론을 일방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가. 유권자들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 (1) 유권자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단어의 선택이 필요하다.
 - ※ 예를 들어,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는 “시(도)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는 “구(시·군)민”, 국회의원로 출마하는 후보자는 “주민 내지는 구민”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 (2) 후보자의 성과를 내세우는 것은 금물이다.
 - ※ “나 잘났다” 식의 표현이나 “내가 해낸”식의 표현보다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이라는 말을 앞에 달아야 한다.
- (3)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할 때에도 유권자가 묻는 것으로 표현한다.
 - ※ “~~ 문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 후보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으로 묻는다.

나. 시청자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 (1) 토론 중 기조연설(모두발언)이나 맺음말을 제외하고는 질문을 한 사회자나 상대 후보를 쳐다보고 발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통계나 수치도 꼭 필요한 곳에만 쓰고 전문용어는 가급적 쉬운 말로 풀어쓰는 것이 중요하다.
 - ※ 자신의 전문성을 과시하기 위한 어려운 말이나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어려운 개념은 풀어서 설명하는 등 유권자들을 배려한다.

다. 유권자들의 인식에 호소한다.

- (1) 사실을 설명하면서도 유권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현실감있게 호소한다.
※ 사실만을 설명할 경우 자칫 변명으로 보일 수도 있으며, 현황만 말하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 (2) 후보자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 사실을 많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에 유의한다.
- (3) 토론회 시청자의 상당수가 토론회를 집중하면서 시청하는 것이 아닌 만큼, 내용적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느낌, 후보자의 이미지, 특정 용어가 기억에 남도록 토론했다.

라. 여유를 잃지 말자

- (1) 질문을 받았을 때 상황에 따라 던질 수 있는 멘트를 연습한다.
※ “이 문제에 대해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주셨습니다.” 등으로 대처한다.
- (2) 상대 후보자의 의견에 반론이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시작한다.
※ “전 생각이 다릅니다.”, “그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등으로 대처한다.
- (3) 자신의 신상에 대한 질문내용을 부정하는 경우
※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저보다도 저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으로 대처한다.
- (4)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가급적 긍정의 발언을 한다.
※ 곤란한 질문에는 “참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아주 기발한 발상입니다.”
- (5) 모든 선거방송토론에는 시간제한이 있으므로 두괄식으로 답변하는 습관을 갖는다.
※ 먼저 결론을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두가지 예를 든다면” 등으로 정리한다.

마. 때로는 감성적 접근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1) 유권자들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같은 답변도 어떻게 말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다.” 로 끝내는 것 보다는, “그래서 저는 ~을 추진하겠습니다.”, “~을 해내겠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마무리해야 더 설득력이 있다.

(3) 유권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걱정해 준 뒤에 발언을 시작한다.

※ 일자리 문제의 경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 여러분께서 일자리 문제로 고통 받고 계십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것을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 등으로 대처한다.

바. 질문의 틀에 갇히지 말라

(1) 예상하지 못한(답변을 준비하지 못한) 질문에 적절히 대처한다.

※ 질문내용에 대한 원칙과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로 삼아 시종 여유있는 표정과 자세로 임해야 한다.

(2) 전혀 알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이나 공세적 질문이라면 진지한 표정으로 ‘모르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한다.

※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고 답변한다.

사. 대립되는 질문에는 상대 후보자의 입장을 배려한다.

(1) 유권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음을 먼저 말해야 한다.

(2)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상대 의견이 충분히 일리 있음을 인정해 주는 예의를 보이는 것이 좋다.

※ 상대 의견을 먼저 말하고, 그럼에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역설한다.

아.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스케일을 키워라

- (1) 상대방의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 (2) 꼭 말해야 할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직접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 지역선거의 경우는 인구가 적고 범위가 좁기 때문에 TV가 아닌 지지자들의 입소문만으로도 얼마든지 전파가 가능하다.
- (3) TV를 통해 후보자가 직접 네거티브 전략을 펼칠 경우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으로 비치게 된다.
 - ※ 설사 이 전략이 성공하더라도 인격적인 면에서의 득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 (4) 네거티브 전략은 유권자들의 투표욕구를 저하시키며, 이것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상호토론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한다.

- (1) 3자 구도의 상호토론에서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며 나머지 한 사람을 빼 놓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 ※ ○○ 후보자는 “제발 우리에게도 의혹을 좀 제기해 달라”는 발언을 한 사례가 있다.
- (2) 반대로 자신도 상대들 중 한 사람을 빼 놓을 수 있다.
- (3) 후보자 상호토론 방식에서 효과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 상대의 답변을 충분히 예상해서 질문한다.

보충질문의 기술

- 1차 질문 후 “예, 그렇게 생각 하는군요. 그런데 몇 월 며칠자 ~에는 ~후보님께서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사가 실렸던데 좀 전에 주신 답변과는 매우 다르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식의 질문을 던진다.
 - ※ 공격적 질문을 할 때의 핵심은 결국 상대방을 틀에 가두는 것
- 후보는 질문시공간만 유권자들에게 상대 후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주시시키고 난 뒤, ‘그 중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라고 상대방에게 말한다.
- 서투른 상대 후보들 대부분은 그 마지막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된다.
 - ※ 이미 유권자들은 질문을 들으며 상대 후보를 ‘문제 있는 후보’로 지목하게 된다.

- (4) 상호토론은 상대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토론 속에 잘 담아내느냐가 관건이다.

차. 자신있는 이슈를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라

- (1) 토론주제에 맞게 메시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나 토론 횟수가 거듭될 때마다 새로운 이슈를 만들 필요는 없다.
- (2) 유권자들은 같은 토론을 여러 차례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신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한 집중공략이 득점 요인이다.

3. 토론의 일반적인 기술

- 현행 TV토론의 방식이 후보자간에 발언 시간을 정확히 체크하기 때문에 발언의 기회와 시간에 따라 치고 빠지고, 무시하는 등 타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공격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
- 토론에 임하는 목표의 설정과 이에 따른 전략의 설정이 필수적이다.

가. 유권자는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

어떤 질문에 답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고, 확고한 해결책이 있다는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고 답변한다.

나. 상대 후보를 의식하지 말자

상대 후보의 반대 질문은 앞선 질문의 답변으로 회피하고,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핵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느낌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답변한다.

다. 상대 후보와 논쟁하지 말고 상대의 호흡을 끊어라

답변으로 꼭 해야 하거나 공격적인 전술로서 상대방의 질문의 의도를 무너뜨리고자

할 경우에는 논점에 따른 입장의 차이를 간단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상대의 호응을 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 TV토론의 승리는 표현전술의 승리이다.

TV토론의 기본전술을 숙지하여 TV토론 시간 내내 토론의 목표와 전략에 따라 일관되게 실행한다.

4. 기조연설 및 맺음말 전략

- 가. 보통 1~2분이내의 시간 안에서 유권자와 대면하는 순간임을 감안하여 강한 인상을 유권자에게 심어줘야 한다.
- 나. 출마 동기에 대해 원고 없이 카메라를 자연스럽게 바라보며 자신있게 발언한다.
- 다. 정중한 인사, 자연스러운 제스처, 유머와 재치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
- 라. 최종 마무리 발언 시에는 개인소감, 유권자에게 하는 당부의 말, 감사인사 등을 핵심적이고 간결하게 전달한다.

5. 경청의 기술

가. 경청의 중요성

- (1) 토론진행에서 경청하는 자세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토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다.
- (2) 토론시작과 동시에 사회자의 발언을 경청하여 토론의 목적과 진행방식을 파악해야 하고, 토론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발언을 경청해야 한다.

나. 사회자 발언 경청하기

- (1) 토론배경, 목적, 진행방식과 절차, 기타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는 사회자의 오프닝 멘트를 경청한다.
- (2) 사회자의 질문유형에 따라 의미를 잘 파악하여 대응방안에 따라 답변한다.

사회자의 질문유형	의 미	토론자의 대응방안
‘무엇(What)’ 형	개념규정과 관련된 질문	토론자 자신의 관점에서 논제의 의미를 정의
‘왜(Why)’ 형	원인규정과 관련된 질문	논제의 이유나 원인을 확인
‘어떻게(How)’ 형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과 관련된 질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 설명
‘어느 것(Which)’ 형	가치판단과 관련된 질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유형 중에서 대안을 선택

다. 상대 토론자 발언을 경청하는 방법(유형)

앞서 생각하기	- 상대방의 발언에 앞서 이야기의 방향, 논점, 결론 등을 짐작 - 추정이 옳을 경우 논점에 대한 이해력과 기억력 강화, 틀릴 경우 청자의 추정과 화자의 논점을 비교·대조해볼 수 있는 효과
평가하며 듣기	- 설명의 타당성, 정확성 여부에 대한 평가 - 감정에 호소할 경우 객관성을 유지하기 - 화자가 논증 시 제시하는 사례의 적절성, 유효성 평가
말한 내용 음미하기	화자가 다음 논점으로 옮겨가기 위해 시간적 공백을 두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그동안 언급된 논점과 발언에 대해 재검토
행간의 의미 파악	- 언어 이외의 표현으로 파악된 행간의 의미를 추가함으로써 화자의 발언 동기 및 의도 등을 충분히 파악하기 - 목소리, 말의 속도,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의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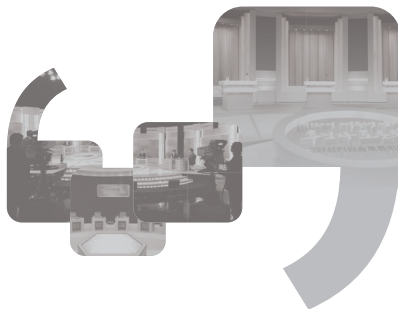
라. 기타 경청의 기술

- (1) 시선관리 : 시선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상대방의 눈 또는 눈아랫부분을 바라본다.
- (2) 표정관리 : 감정 노출 없이 편안한 표정을 짓는다.
- (3) 동작관리 :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움직임은 하지 않은 것이 좋다.
- (4) 메모하기 : 토론 중 핵심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메모한다.

6. 상대방의 공격에 따른 논박 기술

반대 사실을 내세울 때	상대방이 제시한 사실의 조사방법, 조사담당자, 결과 등을 요구하여 사실의 정확성과 권위를 확인
전체를 무시하고 부분만 따질 때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의 문제를 지나치게 따질 경우, 전체의 중요성을 부각
지식과 이론을 지나치게 동원할 때	- 내세운 지식이나 이론의 실제 경험여부를 확인 - 지식이나 이론의 상세한 출처, 객관적 검증 여부를 확인
통계수치를 내세울 때	- 수치가 나온 근거(만든 사람, 시기, 조사방법 등)를 추궁 - 논증절차상 적절한 맥락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
속담과 격언을 인용할 때	- 반대되는 속담과 격언으로 응수 ※ 좋은 일은 서둘러라 ↔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
지나치게 흥분할 경우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면서 흥분을 가라앉힐 때까지 기다림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할 경우	대의명분을 내세워 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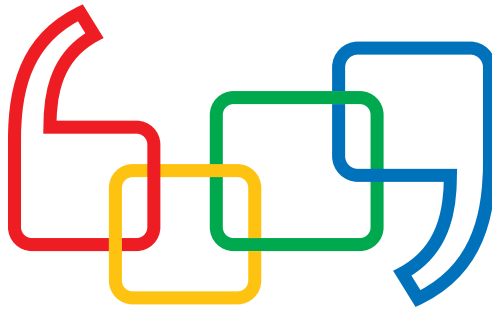
05



선거방송토론의 절차

1. 개최일시 · 장소 등 결정 · 통지
2.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3. 사회자 선정
4. 질문자 선정
5. 토론진행방식 결정
6. 토론주제 선정
7. 설명회 개최
8. 질문사항 선정
9. 토론회 진행 및 질서유지
10.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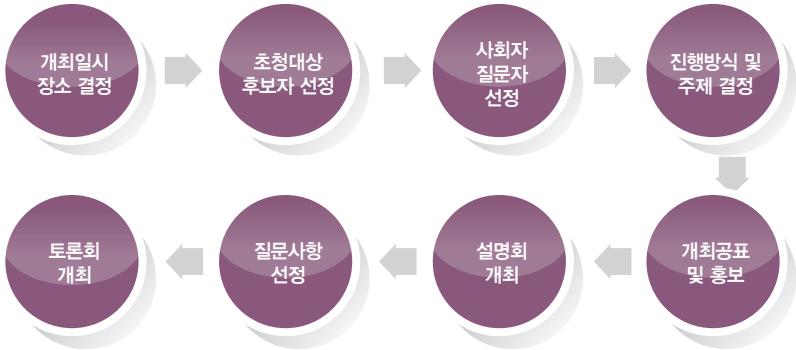
‘선거방송토론의 절차’⁴⁾은 후보자에게 필요한 선거방송토론 진행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후보자는 자기에 맞는 선거방송토론 전략으로 토론에 임하시기 바란다.

4)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관리규정」

05 선거방송토론의 절차

〈토론회 업무흐름〉



1.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통지

가.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중계주관방송사 및 후보자(정당)에게 통지한다.



참고 사항

- 토론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 방송연설회는 후보자다마 10분 이내
- 장소는 중계주관방송사 스튜디오 사용이 원칙이며 여건상 어려울 경우 외부시설 이용
- 토론회를 중계방송할 때는 생방송으로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없이 녹화방송을 할 수 있음.

나. 후보자(정당)를 미리 알 수 있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방송사 관련 용어 정리

- 지상파방송사업자 : 방송을 목적으로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을 하는 사업자(KBS, MBC, SBS, EBS, CBS, 교통방송 등)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엠, CMB, 현대HCN 등)
- 위성방송사업자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한 위성방송 및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을 하는 사업자(KT 스카이라이프)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지상파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IPTV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등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대교어린이TV, tvN, 코미디TV 등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가. 선정기준 및 방법

선 정 기 준		확인방법
국회 의석수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교섭단체별 의석수 현황 (국회 홈페이지)
직전선거 정당 득표율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득표한 정당추천 후보자	당해 선거의 선거록 또는 총람

선 정 기 준		확인방법
최근 4년 이내 선거 후보자득표율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 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당해 선거의 선거록 또는 총람 ※“후보자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의 선거를 말함.
언론기관 여론조사 공표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언론기관에서 통보받은 여론조사 결과

(1) 초청 후보자 선정기준 중 언론기관 여론조사 관련 질의회답

- ◆ 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한”이란 용어의 의미는 “평균”이란 수의 개수나 양의 크고 작은 차이없이 고르게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1개의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라도 다른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없다면 그 조사결과와 지지율이 평균이 될 것임(2005. 4.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후보자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4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임(2005. 4.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 여론조사 결과 반영기간 :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공표한 여론조사

(3) 언론기관의 범위(규칙 제22조)

- ◆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외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관련 용어정리

- 공영방송사 :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
-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 공영방송사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 (SBS, 지역민방 등)
- 일반일간신문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중계유선방송 : 지상파방송 또는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방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방송(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

나. 초청 후보자 선정

- (1) 토론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 (2) 결정된 사항은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후보자에게 통보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시의원의원선거는 후보자를 지정할 정당에 통지한다.
- (3)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참석여부에 따라 참석확인서 또는 불참사유서를 해당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담·토론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자의 토론회 참석 의무

-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 함.
-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고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다.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가 있을 경우

- (1)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 이 경우 개최시간은 초청후보자 토론회 개최시간 이내에서 후보자의 수를 고려하여 해당 토론위원회가 결정한다.
- (2) **각급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사회자 선정

가. 각급토론위원회는 위원 또는 중계방송사로부터 정당의 당원이 아닌 공정한 사람으로 사회자를 추천받는다. 필요한 경우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사회자 후보로 추천해 주도록 요청한다.



나. 추천명단 중에서 토론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4. 질문자 선정

가.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자를 둘 수 있다.

나. 질문자는 **일반국민 또는 전문가** 중에서 토론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다. 질문자는 해당 토론회 시작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후보자 또는 후보자 관계자와 토론회와 관련된 정보나 의견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5. 토론진행방식 결정

가. **초청대상 후보자 모두**를 초청하는 합동토론이 원칙이다.

나. **대답 · 토론회의 형식**

(1)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 등이 답변하는 방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후보자가 일정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는 형식 등으로 구성한다. 국민 또는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여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구성하기도 한다.

(2) 구체적인 형식과 시간·방법 등은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다. **토론위원회는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개최일전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가급적 조기에 결정하여 후보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함).

(1) 참석 후보자가 수가 정해진 때 토론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예상토론자의 수를 고려하여 미리 결정할 수도 있다.

- (2) 진행방식을 결정하여 이를 공표·통지한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또는 참석할 후보자 수가 달라져 진행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구 분		진 행 방 식	
토론 개시		기조연설	후보자의 출마소감, 핵심공약 등
본 토 론	질문 (문제제기) 주체별	사회자 질문	사회자가 후보자에게 공통(개별)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 (토론위원회에서 질문 작성)
		국민(전문가) 질문	국민(전문가)이 후보자에게 공통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 (국민 또는 전문가가 질문을 작성하고 토론위원회에서 선정)
		후보자 질문 (후보자 상호토론)	후보자가 사회자를 통하여 상대후보자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
		후보자 주도권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후보가 일정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는 형식 (후보자당 주도권 4~6분 부여)
		후보자 모두발언 (공약발표) 후 토론	후보자 모두발언(공약발표) 후 발표내용을 주제로 후보자간 토론하는 형식
		혼 합 형	사회자 질문에 후보자 보충질문 혼합
	질문 형식	개별질문	후보자별로 각각 다른 내용으로 질문 (단일질문형 / 보충질문형)
		공통질문	모든 후보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질문 (단일질문형 / 보충질문형)
	답변자 지정방법	사전지정	추첨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지정하는 형식
		자유지정	토론현장에서 자유롭게 지정하는 형식
토론 종료		맺 음 말	유권자에 대한 지지호소, 토론내용 정리보완 등

※ 부록 토론회 진행방식 참고

6. 토론주제 선정

가. 각급토론위원회는 (지역)언론 보도내용, 정당·지자체·후보자 홈페이지 게시내용 등 자체 수집하거나 필요한 경우 각종 단체, 후보자, 여론조사, 인터넷 등을 통해 의제를 수집한다.

나. 토론주제는 대담·토론회의 진행방식, 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각급토론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 1개 이상의 예비 주제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 선정된 주제는 개최 공표·설명회 개최 시에 공개한다.

※ 후보자의 토론준비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공개 가능하다.

7. 설명회 개최

가.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1) 개최시기는 사회자·질문자, 주제 및 진행방식 등이 결정된 이후로 하며, 참석 후보자가 주제에 대하여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설명회에는 후보자 본인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대리인(후보자 위임장 제시)이 참석할 수 있다.

나. 안내 사항

(1) 토론회 개최일정, 참석후보자 성명

(2) 토론주제·진행방식

- (3)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 (4) 후보자의 좌석 및 발언순서 추천
- (5) 토론회에서의 후보자 준수사항
- (6) 대담·토론회의 질서유지(출입제한 등)
- (7) 기타 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토론회 당일 시간계획, 분장이 필요한 후보자 확인, 토론자의 착용·부착물 및 지참물 관련 등

토론자의 착용·부착물 및 지참물 등 관련

(1) 어깨띠 등 착용 관련

- 방송화면으로 송출되므로 가급적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함.
- 토론자는 통상적인 장신구나 배지, 법\$68에 따른 선거운동용 뒤표, 어깨띠를 착용·부착할 수 있음 (관리규정\$8)

(2) 참고자료 지참 관련

- 토론자는 토론회에 A4 용지규격 이내 20장 이하의 낱장자료 외에는 서류, 노트북, 도표, 그림, 그 밖의 참고자료를 소지한 채 참여할 수 없음 (관리규정\$9①).

(3) 전자기기 사용 관련

- 토론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토론회에서 사용할 수 없음 (관리규정\$9②).

- 토론회장내 반입이 불가한 사항, 질서유지(방청객 제한, 출입증 배부 등)
- 방송사 위치 및 주차장 안내

(8) 토론회장의 설비내용 안내

- 토론자와 사회자, 질문자 등의 위치
- 토론자와 사회자의 대기실 및 분장실
- 토론회와 관련된 음향 및 영상에 필요한 주요장비 및 시설

(9) 토론자가 불참한 경우

- 토론자의 좌석 설비 방법 : 후보자가 불참을 통보하여 오거나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론자의 좌석을 설비하지 아니하며, 토론회장의 설비 후에 불참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토론회 시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좌석 등을 철거할 수 있다.
- 발언순서 등 : 불참한 토론자의 다음 순서가 순차적으로 앞당겨지며, 토론회가 시작된 후에 도착하는 때에는 토론에 참석할 수 없다.

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 추천

(1)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를 추천에 의하여 결정한다.

- 후보자가 대리인에게 추천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천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무국장 또는 간사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천할 수 있다.

(2) 먼저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추천순위를 추천하고, 추천순위에 따라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천한다.

추천 참고사항

-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일괄하여 추천한다.
- 후보자간 토론 시 주제별로 질문을 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후보자별로 질문할 주제를 추천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8. 질문사항 선정

가. 주제 선정 후 그 주제에 적합한 사항으로 질문사항을 작성하였다가 토론위원회 의결로 최종 선정한다.

나.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후보자 토론회 주요 질문사항(예시)

- 개인 신상 관련 질문(학력·경력, 가족관계, 군 관계, 재산형성 과정, 과거 발언 등)
- 정치적 견해, 정책 관련 질문
 - 정치 이념,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 정당의 정체성, 선거구제 개편, 대북문제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입장, 여성·환경·복지 등과 관련한 질문
- 지역사업 관련 질문
 - 재정자립도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환경·복지·실업자 대책, 주거환경 개선(도로정비, 재개발사업 등), 지역내 각종 현안 사항

다. 질문사항이 선정되면 **토론위원회는 질문사항의 요지 또는 내용의 공개 여부를 정하되**, 토론방법 등에 따라 질문사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9. 토론회 진행 및 질서유지

가. 토론회의 진행

- (1) 토론회는 토론진행표에 의하여 진행된다. 다만,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론진행표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 (2) 후보자는 토론회 진행 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그 토론자는 토론회장에 다시 입장할 수 없다. 각급토론위원회는 참석대상 후보자가 불참하거나 참석 후보자가 토론회 진행 중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사회자를 통해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방송자막으로 표출하게 한다.
- (3) 발언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기산하며, 후보자가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사회자가 중지를 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언하는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의 마이크 전원을 끌 수 있다.

- (4) 후보자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위원은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배정시간을 초과하여 발언 또는 연설하는 때에는 사회자가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중지를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언 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5) **후보자의 발언**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한다.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나. 위원·직원, 후보자, 사회자·질문자, 중계방송관계자, 경비경찰관, 출입증을 배부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토론회장내에 들어갈 수 없다. 방청을 허용하는 경우 방송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입증을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발급한다.

다. 청중을 두고 진행하는 경우, 청중은 토론회의 진행중에는 박수를 치거나 발언을 하는 등 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가. 개최 요건

- (1)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초청후보자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명뿐이거나 5명 이상인 경우
- 참석확인을 제출한 초청후보자 수가 초청후보자 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 기타 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설회 개최요건 중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 토론회를 중계방송할 공영방송사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시설·장비의 불비 등을 이유로 연설회만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고 통보하여 온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2) 구·시·군토론회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모든 비초청대상후보자가 동의하거나 비초청대상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개최 방법

(1) 개최일시 등 결정·통지

-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사유 발생시에는 개최일시·장소 및 중계주관방송사, 연설시간, 후보자명을 결정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및 중계주관방송사에 통지한다.

※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통지한 후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다시 통지하는 때에는 그 뜻을 함께 통지한다.

- 후보자의 연설시간은 중계방송시간 이내에서 후보자의 수를 고려하여 후보자마다 10분 이내로 결정한다.

(2) 사회자 : 정당의 당원이 아닌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 토론위원회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토론위원회는 설명회 개최시 또는 연설회장에서 후보자의 연설순위를 추천한다.

연설순위 추천 방법

- 먼저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추천순위를 추천하고 추천순위에 따라 발언 순서를 추천
-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후보자 위임장 제시)이 추천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론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천

(4) 합동방송연설회의 진행

- 사회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시시각에 개시를 선언하고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연설시간·진행요령 등을 공표한다.
- 사회자는 후보자가 연설하기 전에 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함) 및 성명을 소개한다.
- 연설시간은 후보자가 연설에 앞서 인사한 때부터 기산하며, 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사회자가 제지를 하거나 마이크를 끄는 등 조치를 취한다.
- 사회자는 마지막으로 연설할 후보자가 연설을 마친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 종료를 선언한다.
- 후보자가 연설할 때에는 후보자(수화통역을 하는 경우에는 수화 통역사를 포함)이외에는 누구도 방영되게 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및 성명을 표시한다.

(5) 기타 : 개최공표·홍보, 질서유지 관련사항 등은 대담·토론회의 경우를 준용한다.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주요일정표

[D* 토론회 개최일]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등
1. 14.부터 3. 23.까지	목 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월1회 이상)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법§82의3
3. 14.까지	월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시설명·이용일자 등 통보기한(공영방송사) → 관할토론위원 회에	선거일전 30일까지	토론규§27②
(3. 24.까지)	(목)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시설명·이용일자 등 통보기한(공영방송사 외 지상파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관할토론위원회에	선거일전 20일까지	토론규§27③
개최일시 통보받은후 지체없이 (1차 위원회의)		대담·토론회 개최일시·장소 결정 ※ 위원회의 개최일정, 소위원회 구성, 토론회 관리 종합계획 보고 등	(1차 위원회의)	편람
3. 24.부터 3. 25.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공선규§20
(1차 소위원회)		선거방송토론 소위원회(주제·진행방식 검토)		
3. 30.부터 4. 4.까지	수 월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 ~ 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⑦ 규§136의15
3. 31 (2차위원회의)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대담·토론회 초청 후보자 선정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법§82의2④, 편람
		대담·토론회 사회자 선정	토론회 개최일전 5일까지	토론규§23③, 편람
		대담·토론회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결정	"	토론규§23④, 편람
		대담·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통지 (후보자, 방송사, 선관위)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토론규§23①, 편람
4. 1까지	금	(합동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 등 개최결정)		토론규§23②, 편람 토론규§23②, 편람
		(불참사유서 제출 후보자 정당한 사유 여부 심사결정)		
		대담·토론회 설명회 개최계획 수립		
(결정후)		토론회 등의 개최 공표·통지(후보자, 선관위)		
(2차 소위원회)		대담·토론회 질문사항 검토		
3차 위원회의		대담·토론회 질문사항 선정	토론회 개최일 전 2일까지	편람
4. 5.부터 4. 8.까지	화 금	선상투표		법§158의3
4. 8.부터 4. 9.까지	금 토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대담·토론회 설명회 개최(안내 및 좌석 등 추첨)	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	토론규§23⑤, 편람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등
D-day		대담·토론회 개최		편람
D+1일까지		대담·토론회 불참사유서 제출(당일 불참자)	토론회 개최일 다음날까지	토론규제23②
4. 13	수	투표(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	법 제10장
		개표(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 토론규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6.4.13.(수) 실시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15. 10. 16부터 '16. 5. 13까지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제218①, 규제136의2
'15. 11. 15부터 '16. 2. 13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제218의4, 5, 6 규제136의4, 5
11. 15까지	일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 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 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제4, 제60의2①, 규제21②
12. 5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등록발송수령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 일전 10일까지	규제51①②, 규제26의2③
12. 15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제60의2①
'16. 1. 14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제60②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 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4(월)]까지	법제53①②
1. 14부터 4. 13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제111
2. 13부터 4. 13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제86②
2. 24부터 3. 4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제218의8, 9 규제136의8, 9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3. 14에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3. 22부터 3. 26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3. 24부터 3. 25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3. 30부터 4. 4까지	수 월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⑦, 규\$136의15
3. 3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3.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4. 1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첨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4.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4. 3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3. 31부터 4. 12까지	목 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조의2
4. 5부터 4. 8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 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4. 8부터 4. 9까지	금 토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13	수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	법 제10장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4. 25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6. 120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 규 : 공직선거 관리규칙

참고문헌

- 
- 강종근, 2015. 「방송학」 한울아카데미
고수웅, 2005. 「의사 전달과 방송출연기법」
권중문, 2014. 「알기쉬운 방송영상 입문」 커뮤니케이션스북스
김홍순 · 이원우, 2007. 「선거전술전략」 도서출판 청어
박영석, 2015. 「TV토론시대」 해드림출판사
박은주, 2013. 「스타기자 Audio 트레이닝」 시대고시기획
석종득, 2008. 「선거전략&선거캠페인」 도서출판 두남
이남기, 2006. 「텔레비전을 만드는 사람들」 커뮤니케이션북스
이연택, 2003. 「토론의 기술」 21세기북스
중앙공무원교육원, 2006. 「토론매뉴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14.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1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례보고서」
최문휴, 2002. 「인터넷과 TV시대의 선거전략」 도서출판 예음

관련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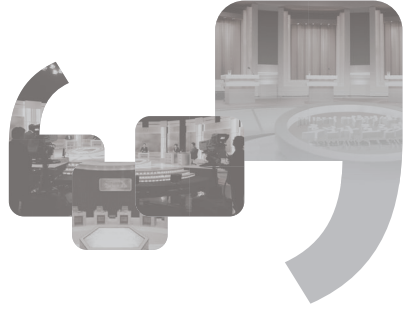


「공직선거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관리규정」



부 록

1. 토론 진행방식(사례)
2. 토론진행표-큐시트(사례)
3. 토론회 시나리오(사례)
4.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토론 진행방식(사례)

토론자 3인

방송시간 (토론시간) 90분 (74분30초)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A/B/C 후보자 (각 1분)	3분
사회자 공동질문	- 안전문제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5분
사회자 개별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 개발공약 비판에 대한 견해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 A/B 후보자 반론(각 1분30초) → C후보자 재반론(1분30초) - 핵심정책 공약과 노동자, 서민 지지율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 B/C 후보자 반론(각 1분30초) → A 후보자 재반론(1분30초) - 안전예산 삭감과 지하철 사고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 C/A 후보자 반론(각 1분30초) → B 후보자 재반론(1분30초)	18분
주도권 토론	- 시정운영과 민관유착 - A/B/C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7분) ※ 다른 2명의 후보자에게 1회 이상 질문(문제제기)하고, 최소답변시간(1분)을 보장	21분
	- 개발, 복지 문제 - B/C/A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6분) ※ 다른 2명의 후보자에게 1회 이상 질문(문제제기)하고, 최소 답변시간(1분)을 보장	18분
사회자 공동질문	○○지역구 발전 방안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C/A/B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5분
예비질문	○○국회의원 당선 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A/B/C 후보자 답변(각 30초)	
맺음말	- A/B/C 후보자 (각 1분30초) ※ 예비질문을 사용할 경우 : B/C/A 맺음말	4분30초

토론자 3인

방송시간 (토론시간)

90분 (71분)

부 록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기조연설	A/B/C 후보자 (각 1분)	3분
사회자 공동질문	○○지역 재정난 해결방안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5분
사회자 개별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대회 성공개최 전략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30초) -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 안전도시 조성 방안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30초) -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 C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사회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30초) - C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15분
후보자 모두발언 후 개별보충질문	- 공약검증 - A 후보자 공약발표(3분) - B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 - C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 C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A 후보자 보충답변(1분) - B 후보자 공약발표(3분) - C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 C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1분) - A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B 후보자 보충답변(1분) - C 후보자 공약발표(3분) - A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 A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C 후보자 보충답변(1분) - B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 B 후보자 보충질문(30초) → C 후보자 보충답변(1분)	27분
주도권 토론	- 자유주제 - B/C/A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5분) ※ 1회 1분 정도 발언, 답변 1분 보장 ※ 진행시간에 따라 주도권토론시간은 각 4~6분으로 조절 가능	15분
맺음말	C/A/B 후보자(각 2분)	6분

토론자 4인

방송시간 (토론시간) 90분 (74분30초)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사회자 공동질문	• (공약) 행정개혁 및 사회안전망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A/B/C/D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6분30초
후보자 사전지정 개별질문 후 자유지정 보충질문	• (공약) • B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C 후보자 답변(1분) • C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D 후보자 답변(1분) • D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A 후보자 답변(1분) • A 후보자 개별질문(30초) → B 후보자 답변(1분) • B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30초) → 지정 후보자 답변(1분) • C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30초) → 지정 후보자 답변(1분) • D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30초) → 지정 후보자 답변(1분) • A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30초) → 지정 후보자 답변(1분)	12분
사회자 공동질문	•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C/D/A/B 후보자 답변(각 1분)	4분30초
	• ○○지역 정체성 실현 방안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D/A/B/C 후보자 답변(각 1분)	4분30초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	• 일자리, ○○지역의 정체성 실현 등 • A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30초) → 지정 후보자 답변(1분) • B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30초) → 지정 후보자 답변(1분) • C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30초) → 지정 후보자 답변(1분) • D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30초) → 지정 후보자 답변(1분)	6분
➡ '자유발언권' 기회 부여 : 공약, 일자리, ○○시의 정체성 등 주제에 관해 토론 도중에 후보당 각 1분씩 2회 발언기회 부여		8분
주도권 토론	• 자유주제 • B/C/D/A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6분) ※ 1회 1분 이상 발언할 경우 사회자 제지	24분
➡ '자유발언권' 기회 부여 : 자유주제로 진행한 주도권토론 중 후보당 각 1분씩 1회 발언기회 부여		4분
맺음말	• C/D/A/B 후보자(각 1분)	4분

토론진행표-큐시트⁵⁾(사례)

부 록

20○○.○.○(17:35~18:40)개최, ○○선거구 후보자토론회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영상	비 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10초		VT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30초	17:35:00	MC/ S/T	○○○ 사회자
3	의제선정 등 설명	- MC 의제선정과정 및 토론규칙 설명	1분	17:36:30		
4	기조연설	☞ 사회자 Bridge - 후보자 A/B/C 기조연설(각1분)	3분30초	17:37:30	S/T	
5	사회자 공통질문	1. <지역현안> - 사회자 질문(1분) - 후보자 B/C/A 답변(각1분30초)	11분	17:41:00	S/T	A 후보자 (정당명) B 후보자 (정당명) C 후보자 (정당명)
		2. <○○ ○○ ○○> - 사회자 질문(1분) - 후보자 C/A/B 답변(각1분30초)				
6	후보자 개별질문	<자유주제> A후보자 개별질문(1분) → B후보자 답변(1분30초) A후보자 개별질문(1분) → C후보자 답변(1분30초) B후보자 개별질문(1분) → C후보자 답변(1분30초) B후보자 개별질문(1분) → A후보자 답변(1분30초) C후보자 개별질문(1분) → A후보자 답변(1분30초) C후보자 개별질문(1분) → B후보자 답변(1분30초)	15분	17:52:00	S/T	
7	사회자 공통질문	3. <○○○○ 정책> - 사회자 질문(1분) - 후보자 B/C/A 답변(각1분30초)	5분30초	18:07:00	S/T	
8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 후 보충질문	<자유주제> C후보자 자유지정질문(30초) → 지정후보자 답변(1분 30초) C후보자 보충질문(30초) → 지정후보자 보충답변(1분) A후보자 자유지정질문(30초) → 지정후보자 답변(1분 30초) A후보자 보충질문(30초) → 지정후보자 보충답변(1분) B후보자 자유지정질문(30초) → 지정후보자 답변(1분 30초) B후보자 보충질문(30초) → 지정후보자 보충답변(1분)	21분	18:12:30	S/T	

번호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영상	비 고
8	사회자 공통질문 (예비질문)	4. <○○○○제도> - 사회자 질문(1분) - 후보자 A/B/C 답변 (각 1분)	4분30초	-	S/T	
9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후보자 B/C/A 맺음말(각1분) ※ 시간이 남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3분30초	18:33:30	S/T	
10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위원 등 소개(자막)	1분	18:37:00	S/T F.S	
11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8:38:00	VTR	

- 5) 큐시트(cue-sheet):프로그램의 개시에서 종료까지 무엇을 어떤 타이밍에서 방송 또는 녹음, 녹화할 것인가를 일정한 형식에 따라 기입하게 되어 있는 진행표를 말한다. 큐시트는 제작 담당자가 프로그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밀하게 정리한 것으로 카메라 담당, VTR 담당, 음향효과 담당자 등 모든 제작 스태프들에게 구두로 지시할 것을 시각적으로 도표화한 것이다.

토론회 시나리오(사례)

20○○. ○. ○(17:35~18:40)개최, ○○선거구 후보자토론회

회차	항목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1	타이틀	10초		CG	제○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주관 :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2	오프닝	17:35:00 ~ 17:36:30 (1분30초)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제○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사회를 맡은 ○○○입니다. • 제○대 국회의원선거가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초청대상 후보자 3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좌석은 앞서 뽐으신 추천 순서대로 앉아 계신데요, 제 왼쪽에 앉아계신 후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	-사회자 : ○○○ • 근거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 국회 소속의원 5인 이상 정당 추천 - 직전선거 득표율 100분의 30이상 정당 추천 - 최근 4년 이내 선거의 유효득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득표한 후보자 - 언론기관 여론조사 지지율 100분의 5 이상 - A 후보자 (정당명) - B 후보자 (정당명) - C 후보자 (정당명)
			• 기호 3번, (정당명) A 후보입니다.		
			• 기호 2번, (정당명) B 후보입니다.		
			• 기호 1번, (정당명) C 후보입니다.		

번 에 대 한 행 방 식 명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3	의 제 및 진 행 방 식 설 명	17:35:30 ~ 17:37:30 (2분)	• 제○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진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회자 공통질문에 이어 후보자가 다른 후보에게 개별질문하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 그리고 후보자간 상호토론 시간이 이어집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즉 시계방향의 후보자 순으로 돌아갑니다. • 그럼 본격적으로 제○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 회 자	• 토론 진행방식 - 기초연설 - 사회자 공통질문 - 후보자 개별질문 -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 후 보충질문 - 맺음말
4	기 조 연 설	17:37:30 ~ 17:41:00 (3분30초)	• 우선, 후보자들에게 기초발언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사 회 자	
			• A 후보자부터 기초연설 시작해주시시오. ☞ (정당명) A 후보 기초연설(1분)		- A 후보자 (정당명)
			• 다음은, B 후보자 기초연설입니다. ☞ (정당명) B 후보 기초연설(1분)		- B 후보자 (정당명)
			• 마지막으로 C 후보자 기초연설입니다. ☞ (정당명) C 후보 기초연설(1분)		- C 후보자 (정당명)
			• 네, 세 분의 기초연설 잘 들었습니다.		
5	사 회 자 공 통 질 문	17:41:00 ~ 17:52:00 (11분)	•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첫 번째로 사회자인 제가 후보자들에게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가능해 볼 수 있는 질문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은 “지역 현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 회 자	주제 : 지역현안
			• (공통질문 1)		
			• 후보자당 답변시간은 1분30초입니다. 답변은 B 후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정당명) B 후보 답변(1분30초)		- B 후보자 (정당명)
			• 다음으로 C 후보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명) C 후보 답변(1분30초)		- C 후보자 (정당명)

예시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5	사회자 공통질문	17:41:00 ~ 17:52:00 (11분)	- 마지막 A 후보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명) A 후보 답변(1분30초)		- A 후보자 (정당명)
			- 각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이어서 공통질문 2번째는 “○○○” 관련입니다.	사회자	주제 : ○○○
			• (공통질문2)		
			- 후보자당 답변시간은 1분30초입니다. - 답변은 C 후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정당명) C 후보 답변(1분30초)		- C 후보자 (정당명)
			- 다음, A 후보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명) A 후보 답변(1분30초)		- A 후보자 (정당명)
			- 마지막 B 후보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명) B 후보 답변(1분30초)		- B 후보자 (정당명)
6	후보자 개별질문	17:52:00 ~ 18:07:00 (15분)	- 이어서 후보자간 개별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토론주제는 자유입니다. - 후보자당 기회는 한번씩 주어지고, 질문시간은 1분, 답변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합니다.	사회자	- 토론주제 : 자유
			- 그럼 먼저, A후보자부터 B후보자에게 질문하십시오. ☞ (정당명) A 후보 질문(1분)		- A 후보자 (정당명)
			- 질문을 받은 B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B 후보 답변(1분30초)		- B 후보자 (정당명)
			- A후보자는 C후보에게 개별질문 하십시오. ☞ (정당명) A 후보 질문(1분)		- A 후보자 (정당명)
			- 질문을 받은 C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C 후보 답변(1분30초)		- C 후보자 (정당명)
			- 다음으로 B후보자, C후보자에게 질문하십시오. ☞ (정당명) B 후보 질문(1분)		- B 후보자 (정당명)

후보자별 질문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6	후보자 개별 질문	17:52:00 ~ 18:07:00 (15분)	질문을 받은 C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C 후보 답변(1분30초)		- C 후보자 (정당명)
			B후보자는 A 후보자에게 질문하십시오. ☞ (정당명) B 후보 질문(1분)		- B 후보자 (정당명)
			질문을 받은 A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A 후보 답변(1분30초)		- A 후보자 (정당명)
			마지막, C 후보자 A후보에게 질문하십시오. ☞ (정당명) C 후보 질문(1분)		- C 후보자 (정당명)
			질문을 받은 A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A 후보 답변(1분30초)		- A 후보자 (정당명)
			C후보자는 B 후보자에게 질문하십시오. ☞ (정당명) C 후보 질문(1분)		- C 후보자 (정당명)
			질문을 받은 B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B 후보 답변(1분30초)		- B 후보자 (정당명)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7	사회자 공동 질문	18:07:00 ~ 18:12:30 (5분30초)	이어서 세 번째, 공통질문 “○○○○”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주제 : ○○○○
			(공통질문3)		
			답변은 B 후보자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당명) B 후보 답변(1분30초)		- B 후보자 (정당명)
			다음, C 후보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명) C 후보 답변(1분30초)		- C 후보자 (정당명)
			마지막 A 후보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명) A 후보 답변(1분30초)		- A 후보자 (정당명)
			예,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사회자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8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 후 보충질문	18:12:30 ~ 18:33:30 (21분)	• 이번에는 후보자로서 자질과 공약내용을 각 후보 자들끼리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후보자당 2명의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기회를 2번씩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질문기회 4번) • 한 질문당 주어진 시간은 역시 30초, 답변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하고,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은 1분입니다.	사회자	- 토론주제 : 후보자 자질 및 공약 검증 - 진행방식 : 후보자 자유지정 개별질문 후 보충질문 (한 후보당 질문 기회 4번)
			• 그럼, C 후보자부터 시작해주시지요. 어떤 후보를 지정하여 질문하겠습니까? ☞ (정당명) C 후보 질문(30초)		- C 후보자 (정당명)
			• 질문을 받은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지정 후보 답변		
			• C 후보자 보충질문하거나 또는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 (정당명) C 후보 질문(30초)		- C 후보자 (정당명)
			• 질문을 받은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지정 후보 답변		
			• 다음으로, A 후보자부터 시작해주시지요. 어떤 후보를 지정하여 질문하겠습니까? ☞ (정당명) A 후보 질문(30초)		- A 후보자 (정당명)
			• 질문을 받은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지정 후보 답변		
			• A 후보자 보충질문하거나 또는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 (정당명) A 후보 질문(30초)		- A 후보자 (정당명)
			• 질문을 받은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지정 후보 답변		
			• 마지막으로, B 후보자 시작해주시지요. 어떤 후보를 지정하여 질문하겠습니까? ☞ (정당명) B 후보 질문(30초)		- B 후보자 (정당명)
			• 질문을 받은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지정 후보 답변		

예 배		시간	오디오	비디오	자막
8		18:12:30 ~	• B 후보자 보충질문하거나 또는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 (정당명) B 후보 질문(30초)		- B 후보자 (정당명)
		18:33:30 (21분)	• 질문을 받은 후보자 답변하십시오. ☞ (정당명) 지정 후보 답변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9	맺음말	18:33:30 ~	• 여기서 오늘 준비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면 맺음말 시간조정 •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께,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발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후보자당 1분씩 드리겠습니다. • 먼저, A 후보자부터 시작해주시시오.	사회자	
		18:33:30 ~	☞ A 후보 맺음말(1분)		- A 후보자 (정당명)
		18:37:00 (3분30초)	• B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 B 후보 맺음말(1분)		- B 후보자 (정당명)
			• C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 C 후보 맺음말(1분)		- C 후보자 (정당명)
			• 이렇게 해서 마무리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사회자	
10	클로징	18:37:00 ~ 18:38:00 (1분)	•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년간, 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지금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후보자토론회였습니다. •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간단한 목례 후, 후보들과 인사)	사회자	• 스크롤 자막 - 위원장 - 위원, 사무국장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공 직 선 거 법

일부개정 2016.1.15. 법률 제13755호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2015.8.13>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1명 이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

2.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정당추천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 수를 말한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에 따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개정 2010.1.25>

④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⑧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 ⑨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⑩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개정 2010.1.25>
- ②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 ③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 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⑧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⑩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2008.2.29>

⑪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 이용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8.4>

⑫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⑬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⑭ 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②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1.25)

[별표 3] (규칙 제143조제2항 관련) <개정 2014.2.13>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만원)

처분대상	관계법조	법정 상한액	부과기준
3.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행위	○ 법 제261조제5항· 법 제82조의2제4항	400	가. 매회 : 400

개정 2016.1.15. 법률 제13757호

- 제39조(정책토론회)** ①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당·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책토론회를 당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
- ③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 ④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 및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2016.1.15. 중선관규칙 제44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조(적용범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제3조(협조요구)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12.23〉

② 제1항의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 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토론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시·도토론위원회와 구·시·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해당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0.1.25〉

제5조(직무)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 ② 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 ③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

승연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장선거에 있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5.8.4>

제5조의2(사무의 대행)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시·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시·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시·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8.4]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0.1.25>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공영방송사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해임하는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0조에 규정된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상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발령대상 및 위원명부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목개정 2005.8.4]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토론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0.1.25>

② 위원장이 결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제8조(상임위원) ① 중앙토론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15>

③ 상임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방송사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신문방송학 · 행정학 · 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각급토론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 · 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공영방송사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공영방송사의 요구가 있는 때
6. 법 제8조의제2항제2호에 따라 구 · 시 · 군토론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임 · 해촉 또는 파면된 때
7.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항에 해당하는 때

제11조(위원의 대우)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 · 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24, 2010.1.25>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토론회등의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4호다목에, 시 · 도토론위원회 및 구 · 시 · 군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다목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 ·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 · 시 ·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2.16, 2008.3.24>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소집)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 · 도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구 · 시 · 군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제14조(위원회의)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② 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③ 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의안표지·의안대장·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15조(위원회의의 공개)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토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정족수) 각급토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소위원회)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담·토론의 진행방식, 주제·질문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론회위원회가 정한 사항

-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토론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25>
- ④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문위원등)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토론회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당해 토론회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제3장 사무기구

제19조(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① 중앙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방송토론팀과 토론지원팀을 둔다.

-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5, 2013.11.25, 2014.5.27>
-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25>
 1. 토론회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2. 토론회등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무
 3. 토론회등의 평가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무
 4. 토론회등의 기법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
 5.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6. 시·도토론회위원회 또는 구·시·군토론회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7. 단체 ·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 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8. 위원회의 및 위원 위촉 · 해촉 등에 관한 사무
 9. 예산의 집행 및 청사 ·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0.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11. 그 밖에 토론회등을 공정하게 주관 ·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 ④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제20조(시 · 도토론위원회 사무국) ① 시 · 도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이 겸임한다.

- ② 시 · 도토론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1.25>
- ③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4>
1. 대담 · 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 위 · 해촉 등에 관한 사무
 3. 구 · 시 · 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 ·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5. 단체 ·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 · 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 · 연수에 관한 사무

제21조(구 · 시 · 군토론위원회 간사) ① 구 · 시 · 군토론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0.1.25>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25>
1. 대담 ·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 위 · 해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 · 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제4장 토론회등의 운영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외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 · 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 · 도의원선거 및 자치구 · 시 · 군의 장 선거

가.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제23조(대담·토론회) ①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법 제82조의2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 등을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참석여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해당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담·토론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사회자·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④ 대담·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언론사·학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도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⑤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대표자가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이 대리인에게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등을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⑥ 대담·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등이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등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대담·토론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개정 2016.1.15>

⑦ 각급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을 말한다)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⑧ 각급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비초청대상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국회의원

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비초청대상후보자가 동의하거나 비초청대상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5.8.4, 2010.1.25>

제24조(합동방송연설회) ①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인뿐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수가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담·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가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일시 및 중계방송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일시 및 중계방송사로 하되,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③ 합동방송연설회에서 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④ 제23조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은 합동방송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합동방송연설회”로 본다.

제25조(정책토론회) ① 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정당법」에 따른 정책토론회는 개최일 전 20일)까지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3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칭하는 자(이하 “정당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의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 ③ 제23조제2항 후단부터 제6항까지(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해당 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로, “후보자”는 “정당의 대표자등”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10.1.25>

제26조(토론회등의 개최시간) 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시간은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8.4>

제27조(토론회등의 중계방송) ①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생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없이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 ② 공영방송사는 협의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선거일 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당해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2조의2제11항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 해당 토론위원회에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④ 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와 협의하여 정책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정하여야 한다.

⑤ 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계방송시설 등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5>

제28조(토론회등의 공표·홍보)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들의 성명, 사회자의 성명, 대담·토론의 주제 및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개최일전일까지 공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9조(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① 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에 따른 방송시설이용료는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의 금액을 말하며,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시설·장비나 무대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30으로 나눈 값(10 미만의 단수는 10으로 본다)에 당해 선거구의 세대수(그 수가 7만 미만인 경우에는 7만으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제1호에 의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의한다.

1. 방송제작비용 : 시설·장비사용료, 무대설치비, 타이틀제작료 및 연출 등 인건비

2. 방송비용 : 송출료

제30조(토론회등의 질서유지) ① 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참석후보자들이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 또는 연설하는 때에는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언 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들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등에서 참석후보자들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사무처리 등)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8.4>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도토론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5>

[제목개정 2013.11.25]

제33조(예산집행) 토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는 당해 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제34조(위임규정) 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토론위원회가 정한다.

부칙<2016.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 지명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관리규정

제정 2013.11.1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고시 제2013-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후보자 토론회의 주관·진행, 그 밖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자의 선정)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에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후보자 토론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토론자의 토론회를 포함한다. 이하 “토론회”라 한다)의 사회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제3조(질문자의 선정) ① 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자를 둘 수 있다.

② 질문자는 일반국민 또는 전문가 중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③ 질문자는 해당 토론회 시작 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후보자 또는 후보자 관계자와 토론회와 관련된 정보나 의견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4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결정 등) ① 토론회의 진행방식은 참석할 토론자(후보자 또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토론자”라 한다)의 수를 예상하여 단일 또는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결정하여 이를 공표·통지한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또는 참석할 토론자 수가 달라져 진행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표·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질문사항의 수집과 공개여부) ① 토론위원회는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수집하여 토론회의 질문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론위원회는 질문사항의 요지 또는 내용의 공개여부를 정하되 토론회방법 등에 따라 질문사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토론회장의 설비) ① 토론위원회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를 지정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3항과 제7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토론회장 설비 내용을 개최일 전일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1. 토론자와 사회자, 질문자 등의 위치
2. 토론자와 사회자의 대기실 및 분장실

3. 토론회와 관련된 음향 및 영상에 필요한 주요장비 및 시설

② 토론회장의 구조는 어느 쪽에서 토론자를 카메라로 비추어도 토론자간에 차이가 없도록 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양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위원회는 참석대상 후보자가 불참을 통보하여 오거나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론자의 좌석 등을 설비하지 아니하며, 토론회장의 설비 후에 불참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토론회 시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좌석 등을 철거할 수 있다.

제7조(토론회의 청중) ① 토론회위원회는 토론회장의 설비나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중을 둘 수 있다.

1. 일반 유권자
2.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의 회원 등
3. 토론회위원회가 참석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추천을 의뢰한 인원

② 청중은 토론회의 진행 중에는 박수를 치거나 발언을 하는 등 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토론자의 착용·부착물)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는 통상적인 장신구나 배지, 법 제68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뒤통·어깨띠를 착용·부착할 수 있다.

제9조(토론자의 지참물 등) ① 토론자는 토론회에 A4 용지 규격 이내 20장 이하의 낱장자료 외에는 서류, 노트, 북, 도표, 그림, 그 밖의 참고자료를 소지한 채 참여할 수 없다.

② 토론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토론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토론회의 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론진행표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질문자는 사전에 토론회위원회가 선정한 질문사항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 사회자는 질문자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토론자는 토론회의 진행 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그 토론자는 토론회장에 다시 입장할 수 없다.

④ 토론회위원회는 참석대상 토론자가 불참하거나 참석 토론자가 토론회 진행 중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사회자를 통해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방송자막으로 표출하게 한다.

제11조(중계방송) ① 토론회의 중계를 주관하는 방송사(이하“중계주관방송사”라 한다)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담·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언론사(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를 포함한다)의 토론회 중계방송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계주관방송사가 토론회의 방송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면구성은 토론자간 최대한 균등하도록 한다.
2. 기조연설과 맺음말을 하는 경우에는 발언하는 토론자만을 비추도록 한다.
3. 토론회의 중계 도중 선거관련 속보를 자막 등의 형태로 방영할 수 없다.

제12조(재방송) ① 토론회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전에 모든 토론자와 해당 방송사가 동의한 경우 토론회를 재방송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토론회의 재방송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토론회의 발언내용 중 법에 명백히 위반된 내용이 있는 경우
2.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 전원이 재방송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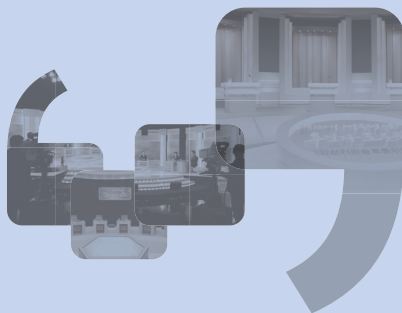
제13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공표에 관한 특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선거일전 60일까지 참석예정 후보자수별로 각각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가이드북



초판1쇄 발행 | 2010년 3월

2판1쇄 발행 | 2012년 2월

개정판 발행 | 2016년 1월

발행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72길 23

Tel. (02) 3473-9947

디자인 · 인쇄 | 렛츠디자인 (02) 2268-8658

